

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“√”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·제8조에 따름
------	-----	--
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	③ 공무원 구분	☐ 일반직 ☐ 특정직()	④ 직급·계급·직무군 (호봉)
	② 전(前) 소속	⑥ 생년월일		
	⑤ 성명 한글 한자	⑦ 주소	□□□-□□□	
	⑧ 전화번호(자택)	⑨ 근속기간	년 월	⑩ 정년퇴직일
	⑪ 비위·형벌 사실 [] 있음 [] 없음(면직알 . . . , 불송치 등 처분알 . . .)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. . .) 형량: . . .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(선고일: . . . , 선고형: . . .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(확정일: . . . , 형량: . . .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(선고일: . . . , 선고형: . . .)		

소속기관 기재란	⑫ 정년 구분	[] 연령정년 [] 계급정년	⑬ 정년	세(년)
	⑭ 경력직 퇴직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	[] 임기제 [] 별정직	년 월	확인 인사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기간)	년 개월 (년 개월)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
	⑰ 비위·형벌 사실 확인	[] 있음 [] 없음(면직알 . . . , 불송치 등 처분알 . . .)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. . .) 형량: . . .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(선고일: . . . , 선고형: . . .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(확정일: . . . , 형량: . . .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(선고일: . . . , 선고형: . . .)	
	확인	인사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	연금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	감사부서의 장 (서명 또는 인)

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명예퇴직원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. 다만,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3. 경력증명서 1부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-----	--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기관의 장

직인

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비고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, 인사·연금·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.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성방법

-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고,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당시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- ③란은 해당란([])에 “√”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검사, 외무·경찰·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적습니다.
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-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-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“√”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⑫ ~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, 인사·연금·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).
- ⑫란은 해당란에 “√”표시를 합니다.
-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“세” 또는 “년”으로 적습니다.
-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(“√” 표시).

처리절차

